

다중이용시설 위 기 상 황 매뉴얼 표준안

- 본 매뉴얼 표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에 참고하도록 일반적인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 각 시설에서는 본 자료를 참고하여 당해시설의 규모, 용도, 주변 환경 특성 등에 맞게 작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방재팀장 (안전 관리자)	대표자 ¹⁾ (최종 승인권자)

¹⁾ 대표이사(법인), 소유자(개인), 소유자가 다수인 점포의 경우
상가조합 대표 등



국민안전처

매뉴얼 제 · 개정 이력

[illegible]

※ 위기상황 매뉴얼을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내용 및 비상연락망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정이력을 관리

C O N T E N T S



/// I. 일반사항

1. 목적	02
2. 법적근거 및 내용	02
3. 시설 현황	03
4. 위기상황 및 유형	08
5. 위기단계별 조직 및 임무	09

/// II. 유형별 위기상황관리

1. 화재 위기	20
2. 지진 위기	22
3. 테러 위기	26
4. 침수 위기	29
5. 폭설 위기	31
6. 붕괴 위기	32
7. 가스 누출 위기	36

I. 일반사항

01. 목적

본 매뉴얼은 ○○○(시설 명칭)의 각종 위기상황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서 등 긴급 구조기관에 현장 지휘권을 인계하기 전까지 시설 자체적으로 중점 대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임

02. 법적근거 및 내용

가.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나.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다. 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당해시설의 각종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위기상황 매뉴얼에 의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함

라. 과태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을 경우
 - 매년 1회 이상 훈련하지 않을 경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03. 시설 현황

가. 건축개요

시설명				주용도			
주 소 (도로명)				전화 번호	주간 :		
					야간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기타() 부지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특별피난계단 수: 피난계단 수: 일반계단 수: 옥외계단 수: 경사로: 일반승강기 수: 비상승강기 수: 피난용 승강기 수: 비상구 수:						
	층수 : 지하 ○ 층 지상 ○ 층						
내진 설계	☐ 유 ☐ 무 ※ 필요 시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문의			사용 승인일	○○○○년 ○ 월 ○ 일		
설계	회사명 :			전화 :			
안 전 관리자	성명 :			위험물 안전 관리자	성명 :		
	전화 :				전화 :		

층 별 현 황	구분	지하층			지 상 층										
		B1	B2	...	1	2	3	4	5	6	7	8	9	10	...
	용 도														
	면 적														
	상주인원														
	수용인원 ¹⁾														
	기 타														

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위험물질											
구 분	소 화 기	간 이 소 화 용 구	옥 내 소 화 전	옥 외 소 화 전	스 프 링 클 러	물 분 무 소 화	포 소 화	이 산 화 탄 소	할 로 겐 화 합 물	기 타	비 상 경 보	비 상 방 송	누 전 경 보 기	자 동 화 재 탐 지	가 스 누 설 경 보 기	기 타	방 열 복	피 난 사 다 리	구 조 대	완 강 기	공 기 호 흡 기	통 로 유 도 등	객 석 유 도 등	인 명 구 조 기 구	유 도 등	비 상 조 명 등	기 타	가 스 시 설	수 변 전 실	화 학 약 품 저 장 소	기 타
	총 계																														
	지하																														
	1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계획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등에 내용이 있는 경우 대체 활용 가능

1) 수용인원 산정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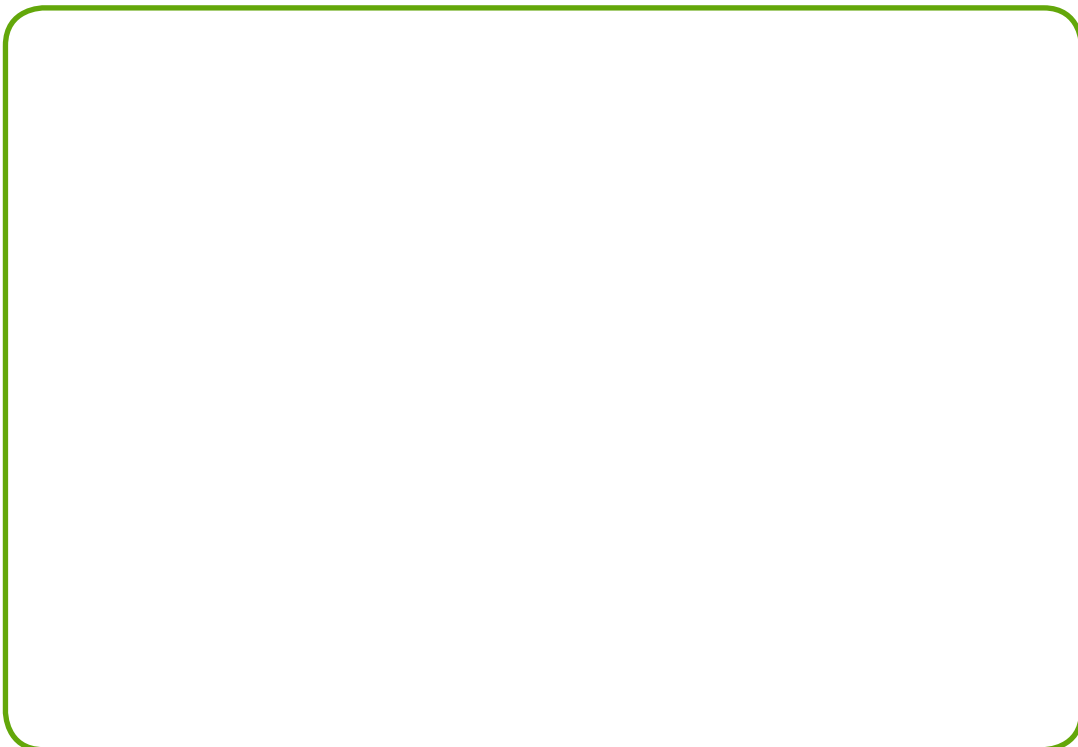
나. 주변 현황도 및 건물 사진

▶ 주변 현황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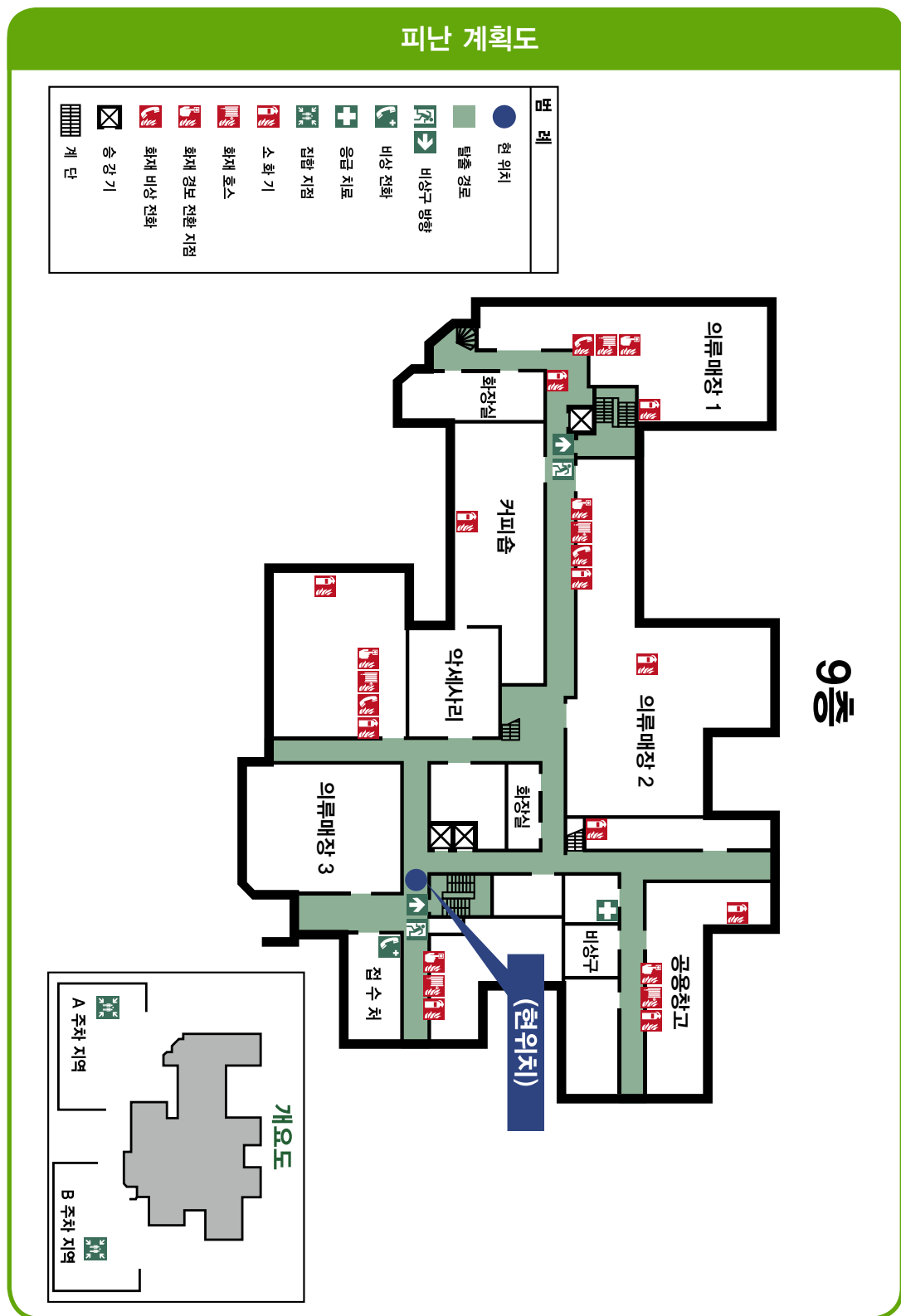


※ 가까운 소방서, 경찰서, 종합병원 등 위치, 거리 등 표시

▶ 건물 사진



다. 층별 피난 계획도(예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피난계획도가 있을 경우 대체 활용 가능

라. 기타 현황

외국어 안내방송

- ▶ 시설의 상주·유동인원 특성을 체크해보고 한국어 외 외국어에 대하여 안내방송을 준비

구분	세부사항	체크
한국어 외 사용언어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기타()	☐

재해약자 파악 및 보조

- ▶ 위기상황 발생 시 재해약자들이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재해약자 유형 및 인원을 파악하고 사전계획 수립

〈재해약자 현황 파악〉

고령자	유아	장애유형				
		이동	시각	청각	언어	인지

※ 휠체어, 피난 보조기기 등 재해약자 우선대피에 필요한 장비 구비

재집결

- ▶ 재집결 장소 지정 : 해당 대상물의 인근에 화재로 인한 열/연기 등의 피해가 적은 지역에 재집결 장소 지정
- ▶ 재집결 장소의 식별 및 공지 : 재집결 장소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피난계획을 사전에 재실 인원들에게 교육 및 공지
- ▶ 운영절차 수립 : 피난 시 재집결 장소에서 재진입 차단,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파악, 중증환자에 대한 부상자 긴급후송 등 운영 절차를 마련

※ 재해약자 파악 및 보조, 재집결에 관련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난계획서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권고)

정책 소개

■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2017.1.28. 시행)

- 정책 목적 :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다중이용 건물 내에 경보 가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물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파하도록 의무화
- 법적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 대상 건축물
 -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역 시설, 공항 및 항만의 여객시설 등
 -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
 - (영화상영관) 하나의 건축물에 7개 이상의 상영관이 모여 있는 영화상영관
- 주요내용
 -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하고, 민방위경보 발령 시 민방위경보단말로 경보를 전달받아,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에 따라 건물 내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함

※ 민방위경보단말 설치를 3년간('19.12.31) 유예하고, 설치 전까지는 시·도로부터 경보발령사항을 유선·이동전화를 통해 문자나 음성으로 전달 받으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민방위훈련 경보발령에 따라 안내 방송 조치

문의 : 관할 시·도 민방위경보담당부서

04. 위기상황 및 유형

가. 위기상황 및 위기유형(예시)

구분	위기유형	위 기 상 황
1	화재	■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시설 피해
2	지진	■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시설 피해
3	테러	■ 테러로 인한 폭발, 인질 발생
4	침수	■ 풍수해 또는 유사원인으로 인한 침수로 발생하는 피해
5	폭설	■ 폭설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 피해
6	붕괴	■ 노후 등으로 시설물 붕괴 피해
7	가스누출	■ 시설물 내 유해가스 누출 및 유입으로 인한 피해

※ 당해시설 위기유형 선정은 시설관계자, 인근시설관계자, 유관기관(소방, 경찰, 시·군·구 등) 등과 함께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음

나. 위기상황 판단 기준표(예시)

위기단계	위기상황 (판단기준)	활 동
평상시 (예방/대비)	■ 평상시 업무수행	•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자재 및 장비 비축, 상황감시, 안내방송 멘트 점검 등 예방 대비 활동
대응 단계	초동 ■ 자체 수습 가능	• 대피유도 및 상황전파, 자체 초동대응 등
	총력 ■ 자체 수습 불가	• 자체대응 및 유관기관 합동대응 등
복구단계	■ 위기상황 종료 후 복구	• 응급복구 및 피해지역 방역 • 원인파악 및 피해상황 집계 • 인명피해 대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시설물 복구계획 수립 - 전기, 통신, 가스 등

※ 위기단계별 명칭은 시설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05. 위기단계별 조직 및 임무

가. 조직구성 및 임무

위기단계	조직 및 임무						
평상시	방재팀 • 예방 대비 활동 –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자재 및 장비 비축, 상황감시, 안내방송 멘트 점검 등						
대응 단계	초동	비상 연락망 가동 위기상황 최초 발견자¹⁾ • 상황 전파(신고 및 방재팀 연락) • 대피유도 자체 초동대응 등 ↓ 방재팀·현장대응반 • 고객 대피방송, 초동대응(인력·장비) 보강 • 총력단계 진입여부 판단 및 보고 등 ↓					
	총력	위기상황지휘본부 • 총괄 지휘 • 상황판단 등 ↓ <table border="1"> <thead> <tr> <th>대피유도반</th><th>현장대응반</th><th>의료지원반</th></tr> </thead> <tbody> <tr> <td> • 비상대피로 확보 • 층별 대피유도 실시 • 재해약자 우선대피 등 </td><td> • 위기 확산 지연²⁾ 및 위험요소 제거 • 현장접근 통제 •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건물 도면 인계 등) </td><td> • 부상자 응급처치 지원 • 응급환자 병원 이송 지원 • 보호자 연락 등 </td></tr> </tbody> </table>	대피유도반	현장대응반	의료지원반	• 비상대피로 확보 • 층별 대피유도 실시 • 재해약자 우선대피 등	• 위기 확산 지연²⁾ 및 위험요소 제거 • 현장접근 통제 •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건물 도면 인계 등)
대피유도반	현장대응반	의료지원반					
• 비상대피로 확보 • 층별 대피유도 실시 • 재해약자 우선대피 등	• 위기 확산 지연²⁾ 및 위험요소 제거 • 현장접근 통제 •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건물 도면 인계 등)	• 부상자 응급처치 지원 • 응급환자 병원 이송 지원 • 보호자 연락 등					
복구 단계	자체 복구팀 • 응급복구 및 피해지역 방역 • 원인파악 및 피해상황 집계 • 인명피해 대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시설물 복구계획 수립 - 전기, 통신, 가스 등						

- ※ 위기상황에 맞게 조직을 통합 또는 확대하되 예시된 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 ※ 위기단계별 조직 구성원은 평소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숙지해야 함
- ※ 총력단계에서 조직의 가용 인원 중 50%이상을 대피유도반으로 편성(권장)

1) 위기상황 최초 발견자 : ① 위기상황을 최초로 목격한 시설 직원 ② 시설 이용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위기상황 신고접수를 받은 직원
 2) 소화기·소화전 작동, 전기·가스차단, 배수펌프 가동 등

위기상황 발생시 최초발견자 초동 대응

❖ 위기유형



전 파



위기상황을 알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예시 “불이야!” 외친 후, 비상벨 누름



시설책임자(방재팀) 연락
소방서 등에 신고



안내방송 및 신속한
고객대피 유도

행 동

예시 화재



안전에 유의하며
소화기 등으로 화재진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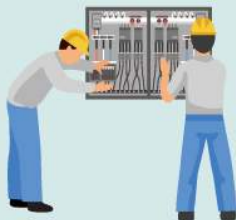
예시 가스누출



안전에 유의하며
가스밸브를 잠근다

위기상황 발생시 총력 대응

❶ 위기유형



평상시
안전점검 및
시설물 정비



위기상황지휘본부

대피유도반



- 총별 대피유도 실시
- 재해약자 우선대피

현장대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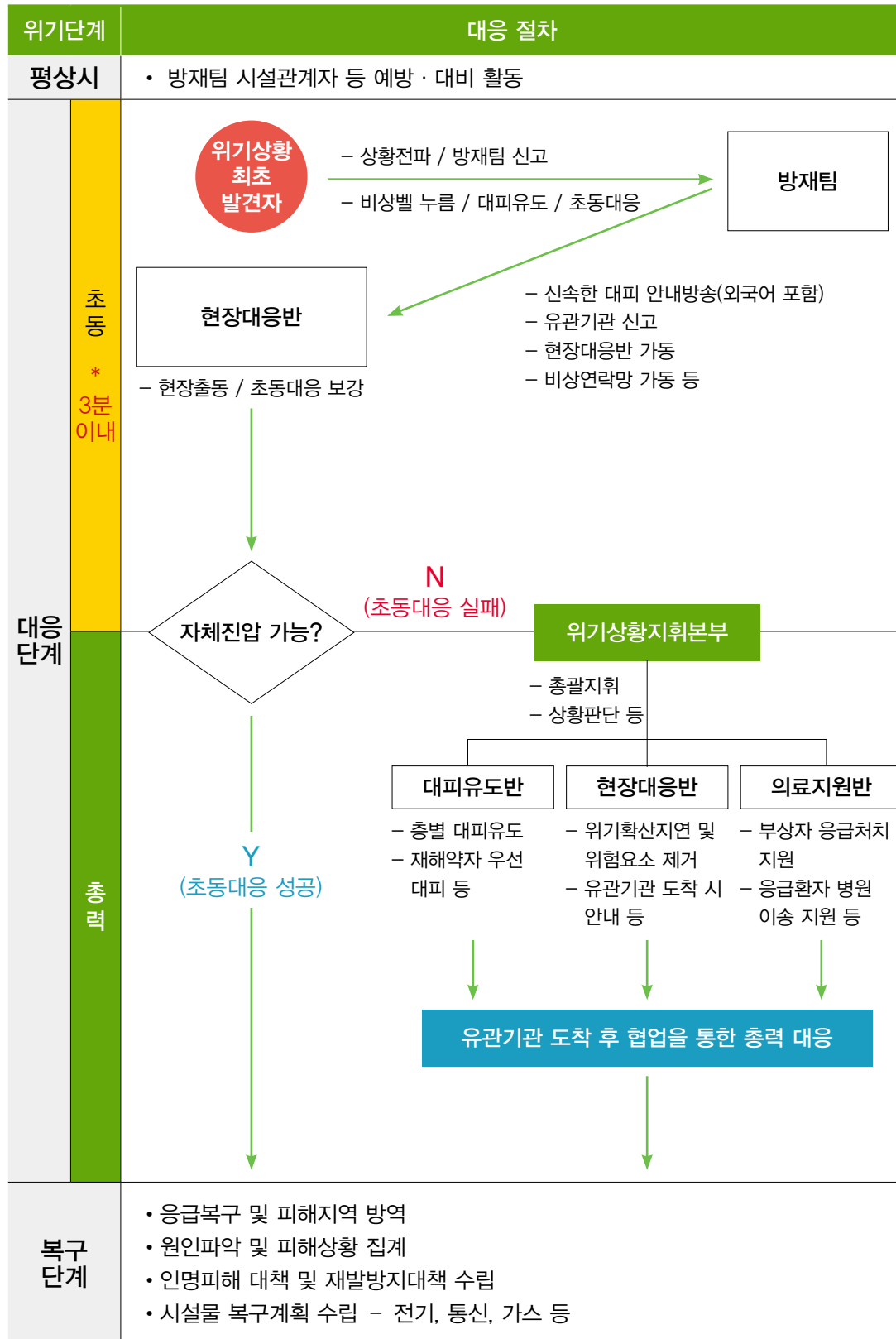
- 위기 확산지연 및 위험요소 제거
-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의료지원반



- 부상자 응급처치 지원
- 응급환자 병원 이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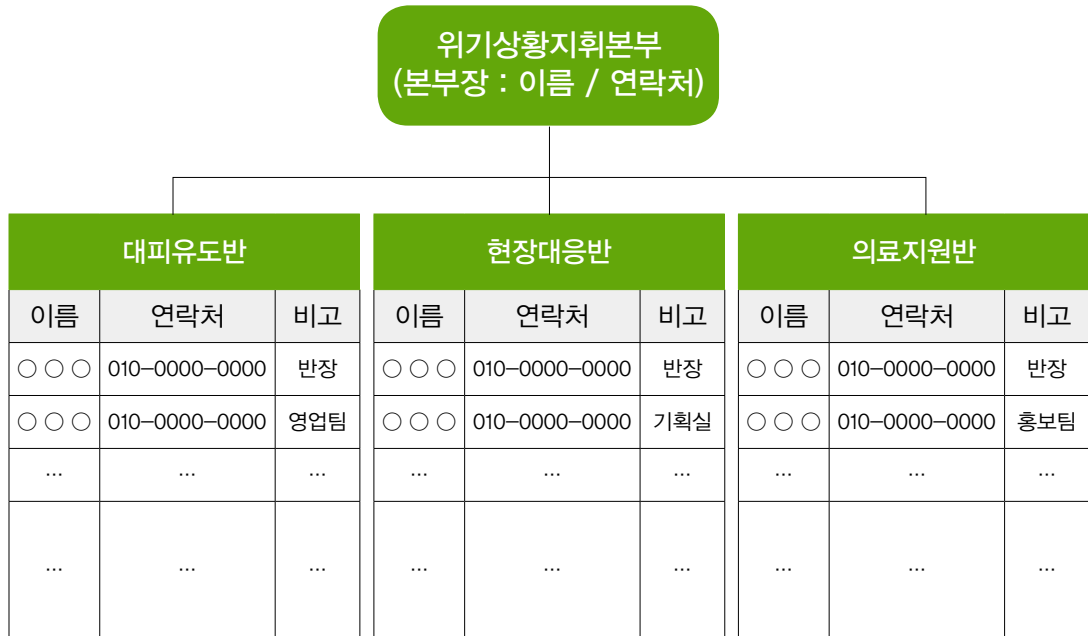
나. 위기대응 기본절차



※ 초동조치 3분 이내는 권고사항이며 위기상황 또는 시설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조직구성 및 비상연락망

방재팀 긴급 연락처
000-0000-0000



유관기관							
긴급 구조기관		전기, 가스, 통신		행 정 기 관		의료기관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소방서		한국전력		지자체		○○병원 응급실	
경찰서		도시가스		안전보건공단		○○병원	
...	...	KT	...	고용노동부	...	보건소	
...	...	...	...	...	...	...	...

- ※ 기존 자위소방대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대체 활용 가능
 - ※ 가용인력이 10인 미만인 경우 50% 이상을 대피유도반에 구성
 - ※ 대피유도반은 총별, 구역별로 인원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구성할 것
 - ※ 위기상황지휘본부장 판단 하에 유연하게 조직 운영 가능
 - ※ 연락처는 단축번호로 저장하여 신속하게 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권고함
- 예 지진으로 인한 긴급대피가 필요할 경우 현장대응반 전체 또는 일부를 대피유도반으로 탄력적으로 편성

위기대응 취약시설 조직구성 예시

- ※ 종교시설의 경우 상주인원이 많지 않고, 특정일에 인원이 몰려 밀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상주 인원들에게도 임무를 부여하여 위기상황에 대비
- ※ 다수의 점포가 밀집해있는 판매시설은 관리직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각 개별 점포의 소유자(점유자)들에게도 위기 발생 시 임무를 부여하여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치
- ※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근무인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조직 구성 시 대피유도반에 인원 집중 배치 권장

방재팀

- 종교시설 : 관리집사, 상근직원 등
- 소규모 숙박시설 : 시설관리자 등
- 점포 밀집 판매시설 : 관리실 직원 등

위기상황지휘본부

- 종교시설 : 목사, 신부, 스님 등
- 소규모 숙박시설 : 지배인 등
- 점포 밀집 판매시설 : 관리소장, 상가조합 대표 등

대피유도반

- 종교시설 : 상근직원이나 남자성도(신도)들을 중심으로 인원 구성
- 소규모 숙박시설 : 프런트 직원, 관리실 직원 등으로 구성
- 점포 밀집 판매시설 : 총별, 구역별 점포 소유자 등으로 구성

현장대응반

- 종교시설 : 상근직원이나 종교인(전도사, 부제, 스님 등), 장년부 임원 등을 중심으로 인원 구성
- 소규모 숙박시설 : 관리실 직원 등으로 구성
- 점포 밀집 판매시설 : 관리실 직원, 상가조합 임원 등으로 구성

의료지원반

- 종교시설 : 상근직원이나 청년부 임원 등을 중심으로 인원 구성
- 소규모 숙박시설 : 프런트 직원 등으로 구성
- 점포 밀집 판매시설 : 점포 소유자 등으로 구성

위기대응 취약시설 행동지침

01

평상시 행동지침

- 신규 인원이 들어오면(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직원 포함) 가까운 비상구 위치확인, 대피방법 및 위기상황 발견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합니다.
- 층별·구역별 비상대피로를 잘 파악하여 위기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 임무가 부여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합니다. (대피유도, 소화기 작동훈련 등)

02

위기발생 시 행동지침

- 비상벨이 울리면 반드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 ※ 종교시설의 예배나 집회 중인 경우, 판매시설 내부에 고객이 있을 때에도 비상벨이 울리면 반드시 상황 확인해야 함
- 화재 등 위기상황 발견 즉시 119와 방재팀(000-0000-0000)으로 신고합니다.
- 대피가 필요할 경우 안전한 피난경로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자체훈련방법(예시)

- 훈련은 한번만으로는 안되고, 반복훈련을 통해 숙달되어야 실제 위기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근무지역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교육훈련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자체훈련을 실시합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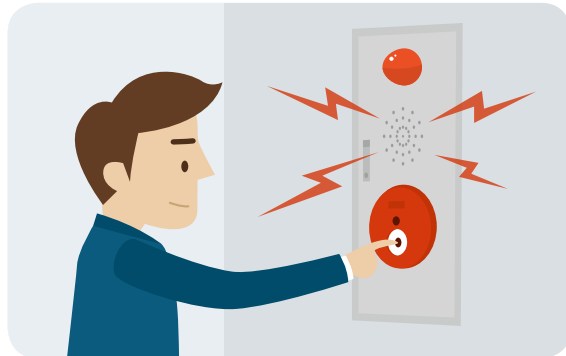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변에 알리고 방재팀과 소방서 등에 연락

- 이를 위해 평소에 실제로 “불이야” 등 위기상황을 큰소리로 알리는 연습을 해봅니다.



- 평소에 비상벨 위치를 확인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누를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 휴대폰에 방재팀과 유관기관 전화번호를 저장해놓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시설 책임자는 평소에 직원들에게 방재팀과 유관기관 등 긴급 전화번호를 숙지하게 하여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전파·신고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02

안전에 유의하며 소화기 등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누출되는 가스밸브 등 위험요인 차단

- 이를 위해 평소에 소화기, 소화전을 손으로 가리키며 위치를 확인합니다.
- 소화기 사용법은 설명만 듣거나 남이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실제 안전핀을 뽑고 직접 작동해봅니다.
- 가스밸브, 전기차단 장치 등 위치를 확인하고 작동법을 연습해봅니다.
- 시설 책임자는 평소에 직원들이 소화기 · 소화전 위치를 알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03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히 대피 안내방송을 하고 층별 · 구역별로 대피유도

- 이를 위해 평소에 층별 · 구역별 비상구, 비상계단 등을 확인 하여, 안전한 피난경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대피동선을 직접 이동해 보면서 몸에 익히고 소요시간 등을 확인합니다.
- 유도봉을 잡고 비상대피로를 통하여 고객을 대피유도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 재해약자(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에 대한 우선대피 방법을 숙지하고, 필요한 장비(휠체어, 대피 보조기기 등)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 시설 책임자는 평소에 직원들이 층별 · 구역별 비상구 위치를 숙지하고 제대로 대피유도를 할 수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라. 개인별 임무카드(예시)

- 위기상황 발생 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방재팀(장○○)		
☎ 방재팀:000-0000-0000 ☎ ○○소방서:000-0000-0000 ☎ ○○경찰서:000-0000-0000 ☎ ○○병원:000-0000-0000		
임무	위기유형	임 무
기본	공동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등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방재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누출	1. 위기상황매뉴얼 작성·관리 2. 준공 도면 확보(소방, 건축 등) 3. 시설물 사전 예방 점검 4. 관련 유관 기관 신고 5.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6. 상황별 안내방송 실시 7. 대피인원 및 환자 인원 집계 등
☎ 방재팀장 : 010-0000-0000		

대피유도반(이○○)		
☎ 방재팀:000-0000-0000 ☎ ○○소방서:000-0000-0000 ☎ ○○경찰서:000-0000-0000 ☎ ○○병원:000-0000-0000		
임무	위기유형	임 무
기본	공동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등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대피 유도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누출	1. ○○층 ○○구역 비상대피로 확보 2. ○○층 ○○구역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진입을 통제하고 비상구로 대피 유도 ※ 유도봉 소지 3. ○○층 ○○구역 화장실 등 사각지대에 잔류인원 있는지 확인 등
☎ 대피유도반장 : 010-0000-0000		

현장대응반(홍○○)		
☎ 방재팀:000-0000-0000 ☎ ○○소방서:000-0000-0000 ☎ ○○경찰서:000-0000-0000 ☎ ○○병원:000-0000-0000		
임무	위기유형	임 무
기본	공동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등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현장 대응	화재 테러	1. 초기 화재진압(확산지연 등) 2. 위험물 또는 테러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3.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침수 가스누출	1. 배수 펌프 가동 및 차단판 설치 2.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요인 차단 등
	지진 폭설 붕괴	1. 대피유도반/의료지원반 지원 2.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3.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 현장대응반장 : 010-0000-0000		

의료지원반(김○○)		
☎ 방재팀:000-0000-0000 ☎ ○○소방서:000-0000-0000 ☎ ○○경찰서:000-0000-0000 ☎ ○○병원:000-0000-0000		
임무	위기유형	임 무
기본	공동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등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의료 지원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누출	1.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2. 부상자 인원이 적을 경우 인명대피 유도 지원 3.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조치 등
☎ 의료지원반장 : 010-0000-0000		

II. 유형별 위기상황관리

01. 화재 위기

가. 개요

화재 발생 시 초동단계에서의 신속한 신고, 진화 및 대피 유도 등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활동

나. 평상시 예방 / 대비 활동

- ▶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작성·보완, 비상연락망 정비·점검 등
- ▶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 ▶ 상시 모니터링 (CCTV 관제 등)
- ▶ 피난경로에 대피 시 방해가 되는 물품 등 적치물 제거, 비상구 폐쇄행위 금지
- ▶ 소화기, 옥내·옥외소화전 등 소화설비 비축 및 작동상태 점검
- ▶ 비상방송, 자동화재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 경보설비 작동상태 점검
- ▶ 유도등, 비상조명등, 완강기, 피난사다리, 공기호흡기 등 피난설비 작동상태 점검
- ▶ 방화셔터, 방화문, 피난계획도면, 준공도면 점검 및 관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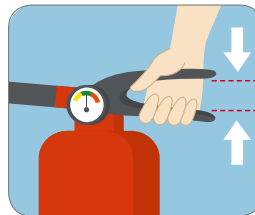
소화기 사용법



1 안전핀을 뽑는다.



2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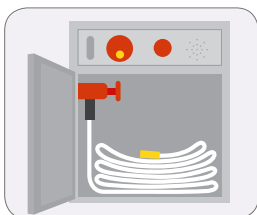


3 손잡이를 움켜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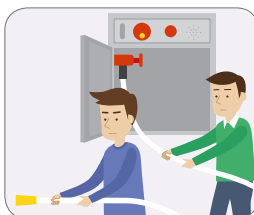


4 분말을 골고루 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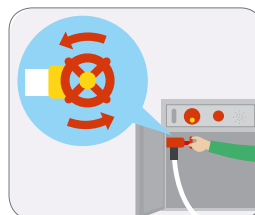
소화전 사용법



1 소화전 문을 연다.



2 호스를 빼고 노즐을 잡는다.



3 밸브를 돌린다.



4 불을 향해 쏜다.

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평소 행동수칙

- ▶ 전기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전문가를 불러 점검을 받을 것
- ▶ 전기코드가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진 경우에는 교체할 것
- ▶ 바닥이나 벽으로 연장한 전선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전기 용량에 맞는 전선을 사용할 것
- ▶ 전기기구 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퇴근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코드를 뽑도록 하고 매일 전기기구를 확인할 것
- ▶ 조리실 내 설치된 전기, 가스 경보기 작동 및 누수여부 수시확인·보수 등

라. 위기상황 대응 시 주의사항

- ▶ 신속한 대피 안내방송과 위기 단계별 조직과 임무 수행
- ▶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및 거동이 어려운 사람 우선대피 조치
- ▶ 대피 유도반은 내부 잔류자가 없는지 확인(화장실 등)
- ▶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이동
-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문을 이용하거나, 외부 도움 요청
- ▶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오면 미리 지정해 둔 재집결 장소로 이동하여 인원 확인
-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소방관에게 인원수와 최종적으로 확인된 위치 설명
- ▶ 건물 출입통제 및 재진입 절대금지
- ▶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이때,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 ▶ 일반용 승강기는 이용을 금지하고 비상계단 이용. 단, 피난용 승강기는 이용가능
- ▶ 전기시설 차단 등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자세



1 손수건, 옷 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보호한다.



2 자세를 낮춘다. (연기보다 낮은 자세)



3 한 손으로는 벽을 짚는다.



4 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한다.

02. 지진 위기

가. 개요

지진에 의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평소 준비해야 할 사항, 지진 발생 전후 행동요령 등을 규정

나. 지진 관련 용어

- **지진** : 지구내부 및 지각에서 축적된 에너지의 방출이 지진파의 형태로 지표면에 충격을 주어 지표면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진원** : 지진이 발생할 때 지반파괴가 시작된 곳(지표면 내부)
- **진앙** : 진원의 바로 위 지표면의 지점
- **지진 규모** : 지진의 방출 에너지를 지진계로 측정한 크기
- **진도** : 사람 또는 물체들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정도를 정해놓은 등급
- **지진해일 주의보** :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경우
- **지진해일 경보** :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경우

다. 평상시 대비 활동

-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 지진 국민행동요령 교육, 훈련, 매뉴얼 작성·보완, 비상연락망 정비·점검 등
-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 상시 모니터링 (CCTV 관제 등)
- 피난경로에 대피 시 방해가 되는 물품 등 적치물 제거, 비상구 폐쇄 행위 금지
- 지진 발생 시 대피 할 수 있는 지진대피소¹⁾를 사전에 파악할 것
- 시설물 요소요소에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 부착
- 시설물 담장은 수시로 점검하여 위험한 부분은 사전에 보수
- 전기 배선, 가스 등을 점검하여 불안정한 부분 수리
- 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라이프라인을 차단하는 방법 교육
- 지진발생시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물 고정·제거 등
- 자동판매기, 책장 등 무거운 물체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하거나 필요시 이동 및 제거조치 등
- 정전대비 소방시설, 비상발전기, 누전차단기 등 작동상태 점검

1) 지역별 지진대피소는 국민안전처(www.mpss.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 가능

- 지진발생시 대피유도원의 임무와 역할 등 수시교육
- 지진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국민안전처 안전디딤돌, 기상청 지진정보 알리미)

안전한 피난경로 확보를 위한 체크사항



- ※ 복도, 통로 등에 대피 시 장애가 되는 물건이 놓여 있지 않은가?
- ※ 가구류 등의 전도(넘어짐) 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 ※ 복사기나 자동판매기와 같이 중량이 큰 물체의 이동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가?
- ※ 가구류의 전도·낙하·이동에 의해 창문 유리가 깨질 가능성은 없는가?
- ※ 가구류의 낙하나 이동으로 피난 경로의 문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가?

라. 위기상황 대응 시 주의사항

진동이 발생하는 동안

- 방재팀은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안전한 곳에 대기하도록 방송 실시 등
 - ※ 직원들도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기
- 본인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여 탁자 밑으로 들어가는 등 안전한 곳에서 신체 보호
 - ※ 탁자가 없을 경우 방석이나 가방, 손 등으로 머리 보호
- 창문이나 가구에 가까이 가지 말고 낙하물에 주의할 것

진동이 멈춘 후

- 진동이 끝나면 전 직원 고객 대피에 총력
- 지진으로 인한 화재, 폭발, 붕괴에 주의하며 계단을 이용하여 사전에 파악해 둔 지진대피소로 고객 및 직원 대피
-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라이프라인 차단
-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

지진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상황별)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대응합니다.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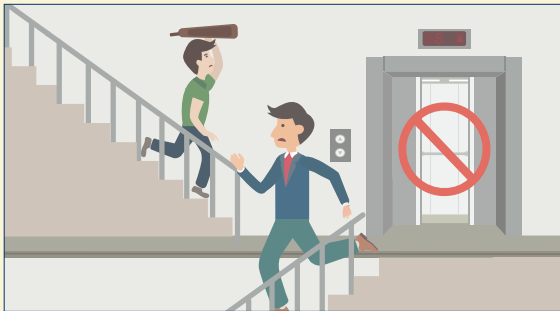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립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 이용 금지**)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지진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장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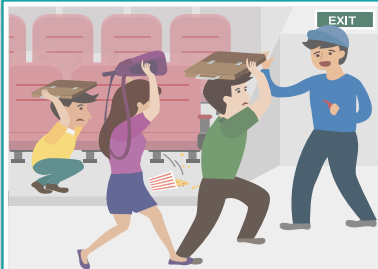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대응합니다.

백화점, 마트에 있을 경우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합니다.

극장, 경기장에 등에 있을 경우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자리에 있다가,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합니다.
※ 지진 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됩니다.

학교에 있을 경우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잡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를 지키며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집안에 있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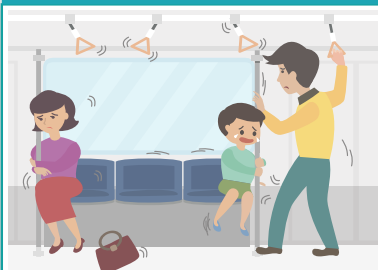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 후, 밖으로 나갑니다.

집밖에 있을 경우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하여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들으면서 키를 꽂아 두고 대피합니다.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해안에서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03. 테러 위기

가. 개요

폭발물 설치, 생·화학무기 살포, 난동 등 테러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사항·대응활동 및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규정

나. 평상시 대비 활동

- ▶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훈련, 매뉴얼 작성·보완, 비상연락망 정비·점검
- ▶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 ▶ 시설물 내·외부 CCTV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 ▶ 피난경로에 대피 시 방해가 되는 물품 등 적치물 제거, 비상구 폐쇄 행위 금지
-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 (경찰, 소방서, 국정원, 군부대 등)
- ▶ 시설물 요소요소에 테러발생시 행동요령 부착
- ▶ 취약지역(주차장, 건물외곽, 화장실, 쓰레기통 등) 집중관리 등

다. 테러 의심 또는 피해상황 신고

테러가 의심될때는
신속하게 신고하십시오



하나 테러의심 또는 피해상황 목격시
신속하게 신고

둘 테러위협 전화를 받았을 경우,
상세히 기억하여 신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하나 정확한 위치, 테러의심 또는 피해상황,
현장분위기 등 구체적으로 신고

**알아
두세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발생 할 수
있는 테러에 대해 예의주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피한 후 111·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라. 위기상황 대응 시 주의사항

폭발물 테러

폭발물 의심물품 또는 차량 발견 시



- 하나** 절대 손대지 말고 신속히 대피 후 경찰에 신고
- 둘** 폭발물 반대 방향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탈출하고, 엘리베이터는 위험하므로 이용 금지

폭발물이 폭발하는 경우



- 하나**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양팔과 팔꿈치를 붙여 가슴을 보호하고,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 두개골 보호
- 둘** 폭발이 종료되어도 연쇄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엎드려 있다가 폭발지점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

화학 · 생물 테러

화학 생물 테러가 의심되는 경우

〈증상〉 눈물, 근육경련, 고열, 복통, 호흡곤란, 균형감각 상실 등



- 하나** 오염공기가 감지되면 손수건,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호흡
- 둘** 오염지역과 오염원을 재빨리 확인 후 신속히 현재 위치에서 탈출
- 셋** 오염지역에서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었을 경우, 비누로 얼굴과 손 등을 깨끗히 씻고 응급치료

핵폭발 · 방사능 테러

폭발이 느껴졌을 경우



- 하나** 핵폭발 섬광을 느끼면 반대 방향으로 엎드려 눈, 귀를 막고 입을 벌림
- 둘** 즉시 지하대피소나 엄폐물을 찾아 몸을 숨김
- 셋** 건물, 대피소 등으로 대피 후 창문을 잠그고 에어컨·히터·환풍장치 운전 정지
TV, 라디오 또는 인터넷을 통해 관계당국의 공식 발표내용을 파악하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억류 · 납치 테러

억류 납치 테러를 당했을 경우



- 하나** 납치범을 자극하지 말고 몸값 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녹음을 요청할 때 응함
- 둘** 눈을 가릴 때 주변 소리, 냄새, 범인 목소리, 이동할 경우 도로 상태 등을 최대한 기억
- 셋** 구출된다는 희망을 갖고 최대한 건강 상태를 유지

04. 침수 위기

가. 개요

태풍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다중이용시설물 침수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활동 규정

나. 평상시 예방 / 대비 활동



-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 · 훈련, 매뉴얼 작성 · 보완, 비상연락망 정비 · 점검
-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 기상청 정보 등 상시 모니터링 (CCTV 관제 등)
- 배수펌프, 수중모터, 모래주머니 비축 및 작동상태 점검
- 말뚝, 삽, 비닐, 마대, 곡괭이 등 수방자재 비축
- 건물주변 배수로 점검 및 준설, 필요시 시 · 군 · 구에 공공하수도 준설요청
- 건물옥상 배수로 점검 및 배수구 청소
- 건축물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비축 또는 설치
- 정전대비 소방설비(비상조명등 등), 비상발전기,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 유류비축 등

다. 태풍 · 호우 예보 시 행동수칙

-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수조치
- 위험한 물건이 건물 주변에 있으면 사전 제거
-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둘 것
- 건물 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 등

라. 위기상황 대응 시 주의사항



- 신속한 대피 안내방송과 위기 단계별 조직과 임무 수행
- 건축물 침수방지를 위하여 차수판 및 모래주머니 등으로 조치
-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대피준비에 철저를 기할것
- 수중펌프, 배수펌프, 비상발전기 가동 및 건물주변 공공하수도 역류시 응급조치
-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릴 것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기상정보를 모니터링 할 것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금지 조치
- 건물침수 발생시 시·군·구 배수담당 부서, 소방서 등에 신고하고 지원요청

05. 폭설 위기

가. 개요

폭설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붕괴·고립 등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활동 규정

나. 평상시 예방 / 대비 활동

-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작성·보완, 비상연락망 정비·점검
-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 기상청 정보 등 상시 모니터링 (CCTV 관제 등)
- 피난경로에 대피 시 방해가 되는 물품 등 적치물 제거, 비상구 폐쇄 행위 금지
- 폭설대비 제설도구 비축(제설삽, 제설밀대, 사다리, 안전로프 등)
- 모든 시설물의 지붕과 배수구 등 점검
- 폭설대비 건물 균열 등 구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시 구조보강
- 시설물이 어느 정도의 폭설 하중에 견딜 수 있는지 확인 후 대책 강구
- 제설장비(의복, 신발, 삽,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 비축
- 자체 제설작업이 안될 경우 지자체 신고 및 제설전문 업체와 사전 협약체결 등
- 정전대비 소방시설, 비상발전기, 누전차단기 등 작동상태 점검

다. 위기상황 대응 시 주의사항

제설작업 준비

- 눈이 쌓인량과 눈상태(건식눈, 습식눈)를 확인
- 제설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 준비
 - ※ 제설삽, 제설밀대, 결빙분쇄봉, 안전로프, 신발, 사다리, 사다리차 등
- 제설인력 및 제설작업구간을 정하고 제설시 안전수칙을 사전교육 실시

제설 실시

- 신속한 대피 안내방송과 위기 단계별 조직과 임무 수행
- 대설주의보·경보 등 필요 시 지붕, 출입구, 건물 주변 등에 제설제 살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건물의 지붕전체의 눈과 얼음 축적상태를 모니터링
- 로프, 사다리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제설 실시
- 제거되는 눈이 건물 배수구나 소화전 등 설비를 덮지 않도록 주의
- 녹은 눈에 의해 건물 내 침출 또는 범람이 일어날 수 있음에 유의
 - ※ 대설로 인한 붕괴 발생 시 붕괴 위기상황 참고하여 대응



06. 붕괴 위기

가. 개요

건축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 노후화 등으로 인한 다중이용건축물 붕괴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활동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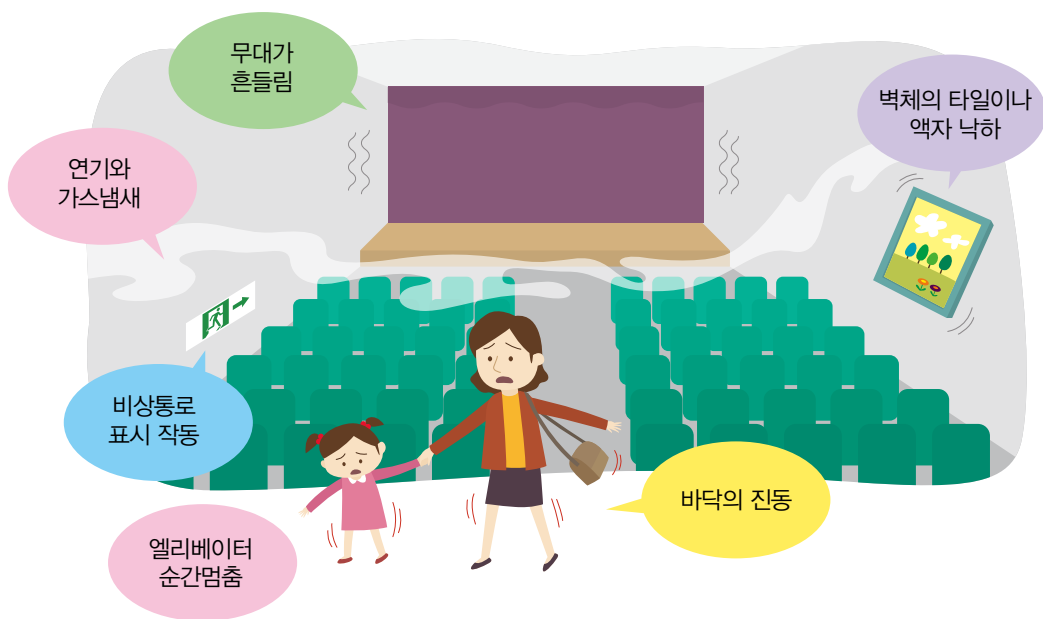
나. 평상시 예방 / 대비 활동

-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 · 훈련, 매뉴얼 작성 · 보완, 비상연락망 정비 · 점검
-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 건축물 구조상 취약부분 상시 모니터링 (CCTV 관제 등)
- 피난경로에 대피 시 방해가 되는 물품 등 적치물 제거, 비상구 폐쇄 행위 금지
- 불법으로 건축물의 축조 및 무단변경(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하지 말것
- 시설물에 당초 설계 하중을 초과 하는 물건이나 시설은 이동 및 제거
- 시설물에 균열 및 보수부위 발견 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즉시 보수
-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물은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즉시 보수
- 옥상 등 시설물에 설치된 배수구를 점검하고 청소실시
- 응급조치에 필요한 두꺼운 말뚝 및 지지대 등을 구조가 취약한 부분에 배치
- 긴급복구 업체와 사전 상호 협약을 추진하여 재해발생 시 긴급대처 등
- 정전대비 소방시설, 비상발전기, 누전차단기 등 작동상태 점검



다. 붕괴 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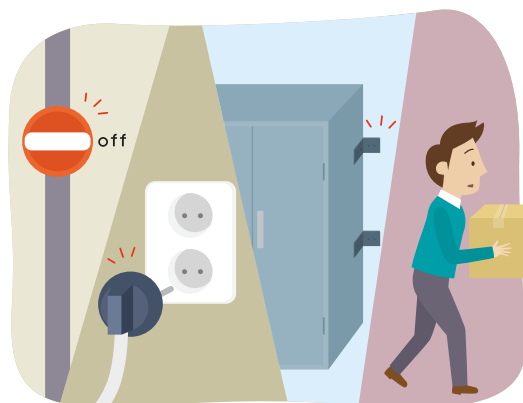
- 바닥이나 기둥 등이 기울고 철근이 노출될 수 있음
 - 벽돌, 간이 벽 등이 부분적으로 붕괴됨
 - “딱딱”하는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수도, 전기, 가스 배관 등이 파손됨
 - 주차장 바닥이 기울어지고, 벽지, 바닥, 마감재 등 뒤틀림 현상 발생
 - 엘리베이터가 운행 도중 갑자기 멈춤
- ※ 붕괴징후가 나타나면 비축된 지지대 및 말뚝 등으로 즉시 응급조치 등



라. 위기상황 대응 시 주의사항

붕괴 징조를 느낄 때

- 신속한 대피 안내방송과 비상벨 등 경보기 작동
- 대피유도반을 중심으로 고객과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즉시 대피 조치
- 붕괴에 대비하여 전기나 가스시설 등을 차단하고, 건물 주변에 있는 물건을 치우거나 고정시켜 두며, 중요한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 시·군·구 및 경찰서, 소방서 등 주요기관에 신고
- 붕괴 위험지역에 안전띠 설치 등 현장접근 통제조치 등



붕괴 건축물 내부에 있을 때

-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고,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여 완강기, 밧줄 등을 이용하여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 재해취약자 우선 대피조치
- 부상자는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함께 대피 후 응급처치
- 대피 중 위급상황에 대비해 건축물에 대해 잘 아는 건강한 성인을 선두로 이동
- 유리파편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코트, 담요, 신문, 상자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
-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제거 할 때 추가 붕괴위험에 대비
- 잔해로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혈액순환이 잘 될수 있도록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일 것
- 주위에 사람이 있다고 확신할 때는 손전등을 비추거나 큰소리로 부르고 파이프 등을 두드려 구조요청
- 가급적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구조 요청 (파이프 등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고, 소리 내어 구조요청하고, 휴대전화로 119 신고)
- 공기 소통이 가능한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 아래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릴 것
-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는 그곳에 머무르고,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이용하지 말 것
-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손전등을 사용할 것



붕괴 건축물 외부에 있을 때

- 건물 밖으로 나오면 추가붕괴와 가스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 붕괴건물 밖에 있는 주민들은 추가 붕괴, 가스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 붕괴지역 주변을 보행할 때나 이동시에는 위험지역 또는 불안정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유리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가방, 방석 등으로 머리 보호



붕괴 건축물에 매몰된 경우

- 불필요한 활동이나 고함으로 체력을 소모하지 말 것
- 입과 코를 옷이나 천으로 가려서 먼지 흡입을 최소화할 것
- 규칙적으로 벽·파이프 등을 두드릴 것
- 휴대전화는 매몰자 탐색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전원은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에만 켜서 배터리를 최대한 절약할 것
- 2차 붕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단단한 테이블 밑이나 창문이 없는 단단한 벽체 옆에서 구조를 기다릴 것



07. 가스 누출 위기

가. 개요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 LNG),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누출에 대비한 예방활동과 대응 시 조치 사항을 규정

나. 평상시 예방 / 대비 활동

- ▶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작성·보완, 비상연락망 정비·점검
- ▶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 ▶ 특히 조리실 등 가스누출이 예상되는 지역은 상시 모니터링 (CCTV 관제 등)
- ▶ 피난경로에 대피 시 방해가 되는 물품 등 적치물 제거, 비상구 폐쇄 행위 금지
- ▶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어 배관, 호스, 연소기 등의 연결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여 누출 여부 확인후 보수조치
- ▶ 이용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연소기 코크와 중간밸브가 꼭 잠겨 있는지 확인
- ▶ 각종 가스기구는 액화석유가스(LPG)용과 도시가스(LNG)용으로 구분되므로 현재 사용 중인 가스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 ▶ 사용전 가스기구에 부착된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숙지 후 사용
- ▶ 가스기구를 구입할 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품 또는 ‘KS표시품’ 구입하여 사용(무허가 불량제품 사용 금지) 등
- ▶ 정전대비 소방시설, 비상발전기, 누전차단기 등 작동상태 점검
- ▶ 가스누설 경보기 및 자동 차단장치 설치



다. 가스 사고를 막기 위한 평소 행동수칙

가스 사용 전

- ▶ 가스불을 켜기 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할 것
- ▶ 액화석유가스(LPG)는 바닥으로부터,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 LNG)는 천정으로부터 냄새를 맡아야 하며, 불쾌한 냄새(양파 썩는 냄새)가 나면 가스가 누출되는 것임
- ▶ 연소기 부근에는 가연성 물질(화장지, 스프레이 통 등) 제거
- ▶ 연소기구는 자주 청소하여 불구멍에 찌꺼기 등이 끼지 않도록 관리할 것

가스 사용 중

- 가스불을 켤 때에는 불이 붙었는지 꼭 확인
- 파란 불꽃이 되도록 공기 조절기로 조절
- 가스 사용 중에는 가능한 자리를 이탈하지 말것
- 불이 꺼지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자동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 확인 등

가스 사용 후

- 가스사용 후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밸브를 꼭 잠글 것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용기밸브도 잠글 것
- 도시가스는 계량기 밸브를 잠가야 하며 이사를 갈 때에는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하여 중간밸브 마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가스레인은 자주 이동하지 말고 한 곳에 고정하여 사용

라. 위기상황 대응 시 주의사항

- 신속한 대피 안내방송과 위기 단계별 조직과 임무 수행
- 가스가 누출 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응급조치 할 것
 - ① 화기(전기기구)를 멀리하고 연소기 코크와 중간밸브, 용기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하고
 - ② 이때 정전기가 발생하여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천천히 열 것
 - ③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 등에 신고
 - ④ 화재가 발생한 경우 즉시 소방서 등으로 신고



LPG 사고

-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침착하게 옷가지나 천, 빗자루 등을 사용하여 쓸어낼 것
- 이 때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 등을 사용하면 스위치 조작 시 발생하는 스파크에 의해 점화될 수 있으므로 전기 기구는 절대 사용금지 등



참고자료

■ 재난정보를 알 수 있는 홈페이지

– 국민안전처 : <http://www.mpss.go.kr>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의 재난안전정보에 들어가면 화재, 지진, 호우, 테러 등 각종 재난유형별 대처요령과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등의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안전처 안전한TV : <http://tv.mpss.go.kr>

* 국민안전처 안전한 TV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형별, 계절별, 생애주기별 재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영상으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 기상청 : <http://www.kma.go.kr>

*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태풍, 호우, 대설 등 각종 기상정보 및 특보현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재난정보 어플리케이션

– 국민안전처 안전디딤돌

* 정부대표 재난안전 포털 앱으로서 재난발생시 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문자, 재난뉴스, 민방위대피소, 응급의료센터(병원,약국 등) 시설물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합니다.

– 기상청 지진 정보 알리미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지진, 지진해일 실시간 발생 정보와 진도표 현상 정보, 국민행동요령을 제공합니다.





고객과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시설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하고,
각종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을 생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위기상황 대응조직 및 절차,
개인별 임무카드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숙달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직원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 대응절차와 임무가 충분히 숙달되어야 직원들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으므로, 바쁘고 번거롭게 생각되더라도
평소 직원교육과 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고객 대피유도’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고객과 이웃의
안전을 만들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위 기 상 황 매뉴얼 표준안



국민안전처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대표전화 : 주간 044-200-2114, 야간(당직) 및 토·공휴일 044-205-1600